

2022년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보호경비원, 보안관리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채용직종	성별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호경비원 (외국인보호분야, 외국인출국지원분야)	여	2명	- 보호외국인 경비 및 출국지원 등 관련 업무 지원
	보안관리원	남·여	5명	-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관리 및 자동심사대 이용 안내 등

※ 최종 합격 후,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직종 변경 가능

2. 채용 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지침」 등에 따름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장 검토

보수	• 보호경비원 외국인보호분야 : 월 고정급 약 255만원(세전) • 보호경비원 외국인출국지원분야 : 월 고정급 약 207만원(세전) • 보안관리원 - 6주기 : 월 고정급 약 202만원(세전) - 8주기 : 월 고정급 약 245만원(세전) - 야간반 : 월 고정급 약 208만원(세전) ※ 직종, 근무체계에 따라 상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근무 체계 (시간)	• 보호경비원 외국인보호분야 - 3개조 1주씩 주간·야간·야간 순 교대 근무(21일 주기)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 colspan="2">근로시간</th><th>휴게시간</th></tr></thead><tbody><tr><td>주간 (1주차 주5일 근무)</td><td colspan="2">08:30~17:30</td><td>1시간</td></tr><tr><td rowspan="2">야간 (2주차 격일 근무)</td><td>평일</td><td>17:30~익일08:30</td><td>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td></tr><tr><td>토·일요일</td><td>08:30~익일08:30</td><td>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td></tr></tbody></table> * 토·일 근무는 야간 근무조가 교대로 24시간 근무 • 보호경비원 출국지원분야 - 주 5일(월~금), 오전반, 오후반 교대근무* * 오전반(09:30~18:30), 오후반(12:00~21:00) • 보안관리원 - 6주기 : 오전-오전-오후-오후-휴무-휴무 * 오전반(06:00~15:00), 오후반(13:00~22:00) - 8주기 : 주간1-조근1-조근2-주간2-휴무-야간-휴무-휴무 * 조근1(06:30~19:30), 주간1(08:00~21:00), 조근2(06:30~15:30), 주간2(12:00~21:00), 야간(19:00~익일 08:00) - 야간반 : 야간(22:00~익일07:00) - 휴무	구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간 (1주차 주5일 근무)	08:30~17:30		1시간	야간 (2주차 격일 근무)	평일	17:30~익일08:30	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토·일요일	08:30~익일08:30	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구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간 (1주차 주5일 근무)	08:30~17:30		1시간													
야간 (2주차 격일 근무)	평일	17:30~익일08:30	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토·일요일	08:30~익일08:30	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 <u>항공기 운항 일정, 승객 수, 그 밖의 근무체계 변경 필요성 등 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체계 및 근무시간 변경하여 운영 예정</u>															
근무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남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근무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성별 : (보호경비원) 여성
(보안관리원) 제한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23조 제1항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등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 의무복무기간 중의 군 경력 제외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으로 보유자(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22.5.20. 취득 분까지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경비 업무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안내 및 보안 유지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험방법 및 일정 · 장소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한 응시자의 자격 등에 적합한 자를 우대사항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보호경비원, 보안관리원)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
 -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유도, 검도에 한함)
 - 여학자력증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인정기준 : 영어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 HSK 4급 180점이상, 일본어 JLPT N3 100점 이상으로 다른 언어도 이에 준해서 인정함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진행

□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5. 20.(금) ~5. 27.(금)	'22. 5. 25.(수) ~5. 27.(금)	'22. 6. 7.(화)	'22. 6. 10.(금)	'22. 6. 14.(화)

-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2. 5. 25.(수) ~ 2022. 5. 27.(금), 9:00 ~ 18:00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 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운서동) 제2정부합동청사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우편번호 : 22382)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총무과 (032-740-7101)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접수,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청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6.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3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등본 사본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1부 추가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명서류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7호)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 여야 함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채용 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서식 7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8. 기타 사항

1.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 근무 특성에 따른 야간 및 순환근무 실시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는 채용직종에 따라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5.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7.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변경 사유 발생 시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8.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총무과(032-740-7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②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필요)	☐ 제출 ☐ 미제출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⑦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⑨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7호)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견출지,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불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 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2년 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2년 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 보호경비원, 보안관리원 중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 명 기재
 - 반드시 복수국적 여부 체크

【별지 서식 제3호】

이 력 서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답당자 기재	응시 직종	

성 명	한 글	한 자	
	병역사항	군필, 미필, 면제, 해당사항 없음	
주 소			
휴대전화	본인		가족
E-mail			
경 력	기 간	회 사 명	담 당 업 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증	발 행 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조직 사회 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상호이익을 되도록 이끌어 낸 과거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작성합니다.
3.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당해 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 .

성명 : (서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